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건설공사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, 작업대 상승 중 협착, 근로자의 추락 등의 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일반적인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고소작업대"라 함은 작업대, 연장구조물(지브), 차대로 구성되며 근로자를 작업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.
 - (나) "작업대"라 함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플랫폼 또는 케이지로 화물을 싣고 필요한 작업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 곳에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.
 - (다) "연장구조물 또는 지브"라 함은 차대에 연결되어 작업대를 지탱하며 필 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.
 - (라) "차대"라 함은 작업대의 하부체로서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.
 - (마) "안정기"라 함은 아웃트리거 등 고소작업대 전체 혹은 연장구조물을 지지 또는 수평을 유지토록 하여 고소작업대를 안정시키는 장치를 말한다.